## 2024학년도 칼빈대학교 대학입학시행계획

## ◎ 전형별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학과)	입학정원	전형유형	모집구분	모집인원	비고
인문	신학과	30	학 생 부 교 과(일반학생전형)	수시	14	
사회				정시'다'군	1	
			수 능(일반학생전형)		9	
			학 생 부 교 과(크리스찬리더특별전형)	수시	2	
			학 생 부 교 과(스포츠선교특별전형)		2	
			학 생 부 교 과(만학자특별전형)		2	
			학 생 부 교 과(농어산촌인재특별전형)유형1·2	수시	1 (정원외)	
			학 생 부 교 과(저소득층인재특별전형)		2 (정원외)	
			재 외 국 민특별전형(정원2%이내)	수시	1 (정원외)	
				정시'다'군	0 (미지정-정원외)	
			수 능(농어산촌인재특별전형)유형1·2			
			수 능(저소득층인재특별전형)			
	복지상담학과	20	학 생 부 교 과(일반학생전형)	수시	13	
				정시'다'군	1	
			수 능(일반학생전형)		6	
	글로벌문화경영학과	10	학 생 부 교 과(일반학생전형)	수시	6	
				정시'다'군	1	
			수 능(일반학생전형)		3	
자연	반려동물학과	30	학 생 부 교 과(일반학생전형)	수시	20	
과학				정시'다'군	1	
			수 능(일반학생전형)		9	
			학 생 부 교 과(특성화고인재특별전형)	수시	1 (정원외)	
			학 생 부 교 과(특성화고출신실무인재특별전형)	수시	4 (정원외)	
			수 능(특성화고출신실무인재특별전형)	정시'다'군	0	
	합계(일반학과)	90		수시	59(+정원외9)	
		(+정원외9)		정시'다'군	31	

## ○ 특별전형(정원 외)입학전형 비제한

	모집유형	모집학과		모집인원
* * * * * * * * * * * * * * * * * * *	학생부교과(특수교육인재특별전형) 수능(특수교육인재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 전교육과정이수재외국민특별전형(3월) 전교육과정이수외국인특별전형(3월) 전교육과정이수외국인특별전형(9월)	<ul> <li>신학과</li> <li>글로벌문화경영학과</li> <li>복지상담학과</li> <li>반려동물학과</li> </ul>	수시 정시'다'군 ◆ 수시 • 정시'다'군	각00명 (정원외)
<b>*</b>	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특별전형(3월) 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특별전형(9월)		모집기간	

#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요소○ 반영비율

	<u> </u>	_						
	모집단위	위(학과	)	전형	병구분	학생부교과·재외국민	수능위주(정시'다'군)	외국인
신	ō	il n	과	전	체			
복	지 상	담 학	과	·전	체	학생부55%, 면접45%	수능 40%, 학생부 30%,	면접 60%, 서류전형 40%
글로	밀벌문호	경영학	학과	·전	체	약성구33%, 현업43%	면접30%	원합 60%, 자류신영 40%
	론	학	과	전	체			

## ○ 반영요소

~	<del></del>			
계열	학생부	반영	수능	반영
인문사회	(수시·정시·재외국민) 영어과목	[석차평균/백분율]	국어영역	[등급활용]
자연과학	(수시·정시) 과학과목, (재외국민) 영어과목		탐구영역	

### ◎ 면접고사(※ 본교 면접구술고사는 인성면접으로 선행학습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음)

	<u> </u>				
	면접기준	면접방법			
면접고사 [전 학과]	○ 주요 질문내용 - 신학생으로서 사명감 및 기본교리 ( <b>신학과</b> 만 해당) - 교양, 특기 및 인생관, 인성 및 품성 - 앞으로의 전공과 관련된 비전 - 평소 신앙생활의 성실도 및 수학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과 적성 - 교양, 특기 및 인생관 등	2인 이상의 면접관이 한 학생을 면접함			

○ 지원자격○ 정원내전형(일반·특별)

	<u> </u>		
모집시기	전형명	세-	부
수시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그내 그드하고 조어지 0004년 0 인 조어에저지 미 그오버에 이런어	그내 그드하고 조어가 도둑이사이 되거이 이다고 이저다 되
정시'다'군	[전 학과]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b>2024</b> 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 (국내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포함)	국내 고등학교 졸업과 중증이성의 자격이 있다고 인경된 자
	수능(일반학생전형)[ <b>전 학과</b> ]		
수시	(크리스찬리더특별전형)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b>2024</b> 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국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국내 고 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포함)	<ul> <li>교회, 선교단체 또는 유사단체에서 크리스챤으로의 비전과 사명으로 각종 봉사 및 사역한 자로서 담임목사 또는 기관장 (목사 등)의 특별추천이 있는 자</li> <li>세례 교인으로 당회장 추천을 받은 자</li> </ul>
수시	학생부교과 (스포츠선교특별전형) <b>[신학부]</b>		<ul> <li>아마추어 또는 실업계 선수경력이 있는 자 또는 스포츠선교 관련 활동이 있는 자로서 담임목사 또는 기관장(구단주, 목 사 등)의 특별추천이 있는 자</li> <li>세례 교인 또는 수세 예정자로 당회장 추천을 받은 자</li> </ul>
수시	학생부교과 (만학자특별전형) <b>[신학부]</b>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국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국내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포함)	만 <b>29</b> 세( <b>1995</b> . 2. 28 이전출생) 이상인 자 세례 교인으로 당회장 추천을 받은 자

## ○ 정원외특별전형

○ 성원외 모집시기	구 글 건 경 전형명	세부
	학생부교과	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국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국내 고
수시	역정구교과 (저소득층인재 특별전형) [신 <b>학과</b> ]	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 2, 10호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 및 자녀 ③ 세례 교인으로 당회장 추천을 받은 자
정시'다'군	수능(저소득층인재 특별전형) <b>[신학과]</b>	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b>2024</b> 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국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 2, 10호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 및 자녀 ③ 세례 교인으로 당회장 추천을 받은 자
수시	학생부교과 (농어산촌인재 특별전형) 유형 1·2	(1) 국내 농어촌(읍면) 및 도사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학생 (2)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모두가 농어촌지역 및 도사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학생 (2) 로 가벼지 지역에서 거주한 학생
	[신학과]	유형 2 ① 국내 농어촌 지역(읍면) 및 도사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유형 1·2) 행정구역의 적용 (유형 1·2) 행정구역의 적용 (기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 (기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면 또는 도사벽지였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일지역은 읍면 또는 도사벽지로 봅니다. ※ 단, 검정고시 출신자는 농어산촌인재특별전형 유형 1, 2 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시'다'군	수능 (농어산촌인재 특별전형) 유형 1·2	(고통) 세례 교인으로 당회장 추천을 받은 자 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학생 연변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학생 인후 구를 제외합니다.) 모두가 농어촌지역 및 도사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학생 연합니다. (이 경우 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
	[신학과]	(1) 국내 농어촌 지역(읍면) 및 도사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함정구역의 적용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유형 12) 행정구역의 적용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기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 (기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면 또는 도사벽지였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 동으로 개환 경우에도 당해 동일지역은 읍면 또는 도사벽지로 봅니다. ※ 단, 검정고시 출신자는 농어산촌인재특별전형 유형 1, 2 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시 정시'다'군	학생부교과 (특성화고 인재특별전형) [반려동물학과]	① 국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91 조제 1 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 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76 조제 3 제 1 호에 또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 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 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의 졸업자, 2024 년 2 월 졸업예정자 ②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으로 인정하는 '특성화고등학교등'에 설치된 기준학과 지원가능 - 특성화고등학교의 기준학과가 대학이 제시한 기준학과와 달라도 대학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곡과를 30 단위 이상 이수시 인정가능 ③ [제외] 종합고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 제외
수시 정시'다'군	학생부교과 (특성화고 출신재직특별전형) [반려동물학과]	[공통]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① 국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91 조제 1 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 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76 조제 3 제 1 호에 딱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 정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포함, 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의 졸업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76 조의 3 제 1 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사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 졸업자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90 조제 1 항제 10 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④ 「평생교육법 시행령」제 90 조제 1 항제 10 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④ 「평생교육법 시행령」제 90 조제 1 항제 10 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④ 「평생교육법 시행경」제 90 조제 1 항제 10 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④ 「평생교육법 시행경」제 90 조제 1 항제 10 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 「평생교육법 시행경」제 90 조제 1 항제 10 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 「평생교육법 시행경 및 3 조인 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행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재직인정기간」근로기준법 제 11 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 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4 대 보험 중 1 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4 대 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받은 자
수시	학생부교과 (특수교육인재특별전형) <b>[전 학과]</b>	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국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포함) ② 고등교육법 제 29 조제 2 항제 4 호에 따라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다. 국가공애인복지법」 제 32 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다.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 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장애 또는 지체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 ③ 세례 교인으로 당회장 추천을 받은 자(신학과만 해당)

모집시기	전형명	세부
정시'다'군	수능(특수교육인재 특별전형) [전 학과]	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2024 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국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포함) ② 고등교육법 제 29 조제 2 항제 4 호에 따라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가. 국가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 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장애 또는 지체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 ③ 세례 교인으로 당회장 추천을 받은 자(신학과만 해당)
수시 정시'다'군	재외국민특별전형 (정원2%이내) <b>[신학과]</b>	[공통] ①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해외근무자(사업/영업/선교 포함)의 자녀 ② 세례 교인으로 당회장 추천을 받은 자 [해외근무기간] 부모 중 1 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 년(1,095 일) 이상을 재직/사업/영업/선교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체류) [해외재학기간] 해외근무부모 근무지 소재 국가 고교 1개 학년 이상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 [해외체류기간] ① 학생: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② 부모: 학생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수시 정시'다'군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 [전 학과]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② 세례 교인으로 당회장 추천을 받은 자(신학과만 해당)
수시 정시'다'군	전교육과정이수 재외국민특별전형 <b>(3월)</b> <b>[전 학과]</b>	①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귀하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② 세례교인으로 당회장 추천을 받은 자(신학과만)
수시 정시'다'군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특별전형 <b>(3월)</b> [ <b>전 학과</b>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수시 정시'다'군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특별전형 <b>(9월)</b> [ <b>전 학과</b>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모집기간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특별전형(3월) <b>[전 학과]</b>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모집기간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특별전형(9월) <b>[전 학과</b>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